

충청북도 재향경우회 지원 조례안

검토보고서



행정문화위원회

수석전문위원 신복순

충청북도 재향경우회 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

1. 발 의 자 : 안치영 의원 등 8명

2. 발의일자 및 회부일자

- 발의일자 : 2024년 10월 2일
- 회부일자 : 2024년 10월 2일

3. 제안이유

- 「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」이 개정(2020. 3. 31. 법률 제17167호로 일부개정되어 2020. 7. 1. 시행된 것)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경우회의 사업에 대해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조항이 신설됨.
- 충청북도 재향경우회가 수행하는 법질서 확립, 치안 협력 등 공익증진사업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도민안전 증진 및 도정발전에 기여하고자 함.

4. 주요내용

- 재향경우회를 「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」 제5조제2항에 따라 조직된 충청북도 재향경우회로 규정함(안 제2조).
- 법질서 확립 및 홍보사업, 치안협력 및 지원 사업, 학교폭력 및 아동범죄 예방활동 등 도민안전을 위한 활동 사업 등 도지사가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사업의 내용을 규정함(안 제3조).

-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 이 조례에 따른 중복지원을 금지하고, 경우회 활동을 통해 지역발전에 현저히 기여한 자에 대해 포상할 수 있도록 함(안 제6조 및 안 제7조).

5. 검토의견

가. 제정 필요성

- 본 조례안은 국가 치안활동 및 공익증진에 기여할 목적으로 「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」(이하 “법”)에 따라 설립된 법정단체인 “충청북도 재향경우회”의 지원사업과 지원근거를 정하려는 것임.
- “대한민국재향경우회”는,
 - 법에 따라 법인으로 설립된 법정단체로,
 - 경우회 회원의 복지 증진 및 권익 신장 사업, 치안 협력 및 지원 사업, 외국 재향경우회와의 친선 유지 및 유대 강화 사업, 자유민주주의체제 수호·호국정신의 함양 및 고취 사업, 회원 자녀 장학사업, 회원 상호간 친목 도모 사업 및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고,
 - 퇴직 및 현직 경찰공무원으로 구성되며,
 - 중앙회, 시·도회 및 지역회로 조직되어 있음.
 - “충청북도 재향경우회”는 법 제5조에 따른 “대한민국재향경우회”의 시·도회에 해당함.
- 한편 법 제15조는 경우회의 재정에 관하여 회원의 회비, 사업 수입과 그 밖의 수입으로 충당하고(제1항), 국가가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는 것으로만 정하고 있었으나(제2항), 2020. 3. 31. 법률 제17167호 일부개정을 통해 지방자치단체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회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 규정

(제3항)을 신설하였음.

- 이에 따라 본 조례안은 “충청북도 재향경우회”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도민 안전 증진 및 도정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으로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됨.

【참고】

- 우리 도를 제외한 전국 9개 시·도에서 유사조례를 제정하여 시행 중임.

시·도	서울	부산	대구	인천	광주	대전	울산	세종
제정일	-	-	-	20.10.07.	-	23.02.24.	-	-
시·도	경기	강원	충남	전북	전남	경북	경남	제주
제정일	22.01.06.	21.04.09.	21.12.30.	23.12.08.	20.12.31.	21.04.01.	22.12.29.	-

나. 조문별 검토

- ‘안 제1조’는 목적 규정으로, 본 조례가 법에 따라 조직된 “충청북도 재향경우회”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사회 질서 의식 함양과 범죄 예방 협력 활동을 통해 도민 안전 증진 및 도정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을 규정함.
- ‘안 제2조’는 정의 규정으로,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“경우회”의 용어에 대해 정의함.
- ‘안 제3조’는 충청북도지사가 지원할 수 있는 사업으로, ▲법질서 확립 및 홍보사업, ▲치안협력 및 지원 사업, ▲학교폭력 및 아동범죄 예방활동 등 도민안전을 위한 활동 사업, ▲도민에 대한 봉사과 공익 증진 사업 등을 정하고 있고, 보조금 지급의 근거를 정하고 있는바, 조례의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으로 보임.
- ‘안 제4조’는 보조금 지급에 따른 도지사의 감독에 관한 사항을

규정함.

- '안 제5조'는 보조금 신청, 교부, 정산 등 지급 절차에 관하여 본 조례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「충청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를 준용하도록 규정함.
- '안 제6조'는 경우회가 다른 법령·조례 등에 따라 지원받은 경우 중복지원을 금지하도록 규정하고, '안 제7조'는 경우회 활동을 통하여 지역발전에 현저히 기여한 자에 대한 포상할 수 있도록 규정함.

다. 종합 검토의견

- 본 조례안은 「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」이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회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개정됨에 따라, 그에 근거하여 “충청북도 재향경우회”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, 지원 사업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됨.
- 또한 본 조례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원 대상 사업이 조례의 목적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고, 지원 절차상 특별한 문제도 없는 것으로 판단됨.
- 다만, 조례의 취지는 “충청북도 재향경우회”의 공익적 사업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도민 안전 증진 및 도정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이므로, 지원 과정에서 단체 자체에 대한 무분별한 보조금 지급이 되지 않도록 사업의 목적 및 계획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임.

붙임: 충청북도 재향경우회 지원 조례안. 끝.